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
(경유)

제목 관원질의 요청(대지의 범위)에 대한 회신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14594(2022. 7. 20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질의요지

- ?건축법 시행령?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(대지의 범위)의 적용과 관련하여, 도시·군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?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포함된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 하는 경우,
 -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범위는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?고시된 전체 토지로 한정되는지 또는 실시계획인가 면적이나 건축물의 세부시설별 조성계획 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

나. 검토의견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(一團)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도시·군계획시설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인가 면적이나 건축물의 세부시설별 조성계획 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개별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국토교통부장관

시설사무관

김영범

시설사무관

박현규

건축정책과장

전결 2022. 8. 5.

이진철

협조자

시행 건축정책과-8937

(2022. 8. 5.)

접수 건축디자인과-15772

(2022. 8. 5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41 팩스번호 044-201-5574 / gsmco2200@molit.go.kr / 비공개